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확대 (서영교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정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안도걸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임광현의원안) ····· 2

Ⅰ. 개요

1.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확대 (서영교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정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안도걸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임광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제1호)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교육비의 160%로 계상)(조정훈의원안)를 합산한 금액
-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서영교·안도걸·정일영의원안) - 초등학생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박수민·박정·조정훈의원안) - 초·중학생의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임광현의원안)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지급한 교습비등 (박성준의원안)
○ 세액공제율: 15%	○ 세액공제율: 30%(윤호중의원안)
○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한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명	○ 공제한도 확대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400만원/명(박정·안도걸의원안) 연 500만원/명(박성준의원안)

* 서영교의원안 2024. 6. 7. 제출(의안번호 196), 박성준의원안 2024. 6. 14. 제출(의안번호 508), 정일영의원안 2024. 6. 20. 제출(의안번호 685), 안도걸의원안 2024. 6. 24. 제

출(의안번호 835), 박정의원안 2024. 6. 26. 제출(의안번호 949), 박수민의원안 2024. 6. 28. 제출(의안번호 1133), 조정훈의원안 2024. 7. 3. 제출(의안번호 1325),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8), 임광현의원안 2024. 9. 5. 제출(의안번호 3676)

□ 9건의 개정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상향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만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영교・안도걸・정일영의원안은 초등학생의 음악・미술・무용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박수민・박정・조정훈의원안은 초등학생의 전체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임광현의원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음악・미술・무용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박성준의원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전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공제대상 학생	대상 학원, 시설 등	비 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체육시설	서영교・안도걸・정일영의원안
	전체 학원, 체육시설	박수민・박정・조정훈의원안
초등학생, 중학생	예능학원, 체육시설	임광현의원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박성준의원안

② (공제한도 및 공제율 상향) 박정・안도걸의원안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박성준의원안은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이고,

조정훈의원안은 해당 교육비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출한 교육비의 24%를 공제[1]하려는 것이며, 윤호중의원안은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 평생교육

1) 현행법상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이므로, 실제 교육비를 100만원이라 하였을 때 개정안과 같이 100만원의 160%인 16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24만원이 되어, 실제 지출한 교육비 100만원에 24%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남.

시설,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제도는 지난 1977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음.

□ 9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생 문

2)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7	1.05	0.98	0.92	0.84	0.81	0.78

자료: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18년 64.3만원[3]에서 2021년 72.1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중은 2018년 51.1%, 2021년 44.0%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18년 (비중)	2.1 (3.3)	11.2 (17.4)	21.7 (33.7)	2.2 (3.4)	28.3 (44.0)	64.3 (100.0)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2018년의 경우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둘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3)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인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50.3%,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이 11.5%에 불과[4]한 상황에서, 하교 이후의 자녀돌봄을 위해 부득이하게 초등학생 자녀를 체육시설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이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므로 해당 맞벌이 부부의 돌봄부담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예체능 학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예체능 분야는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체능 학원이 재능계발 및 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술·체육활동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며,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는데, 공교육의 예체능 수업시수 증가를 통한 교육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을 위해서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63.6%를 차지하였으며, 보육을 위해서 수강한다는 비중이 17.5%로 일반교과의 사교육보다 보육 목적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 5.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2023년)]

(단위 : %)

구분	진학준비	학교수업 보충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	친구를 사귀기 위해	보육	기타
초등학교	3.2	5.9	63.6	8.8	17.5	1.0

자료: 통계청,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2023년)]

(단위 : %)

구분	진학준비	학교수업 보충	선행학습	불안심리	보육	기타
초등학교	6.1	49.8	25.3	2.8	12.2	3.8

자료: 통계청,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저출산의 원인인 경제적 부담 중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초·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이 공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공교육비의 비중보다 크고 2022년 대비 2023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 참여시간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공제한도의 확대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영유아	7.1	0.1	8.9	6.1	38.3	60.6
초등학생	-	2.7	42.7	2.1	31.1	78.5
중고등학생	-	4.6	50.6	-	36.6	91.9
대학생 이상	-	28.0	2.8	-	42.8	73.6

*2018년의 경우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및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 비교]

구 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전 체	26.0조원	27.1조원	78.3%	78.5	7.2시간	7.3시간
초등학교	11.9조원	12.4조원	85.2%	86.0	7.4시간	7.5시간
중학교	7.1조원	7.2조원	76.2%	75.4	7.5시간	7.4시간
고등학교	7.0조원	7.5조원	66.0%	66.4	6.6시간	6.7시간

자료: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4. 3.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자녀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액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것이고,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60%	1.6	3.2	11.6	0.5	29.2	46.1
60%~80%	3.2	3.0	16.6	0.2	29.8	52.8
80%~100%	2.8	4.9	23.1	0.8	34.2	65.8
100%~120%	3.2	5.9	25.8	2.8	34.2	71.9
120%~140%	2.7	6.2	29.2	3.5	35.7	77.3
140%~160%	2.8	6.8	30.6	6.4	36.2	82.8
160%~	2.9	9.9	44.4	6.6	6.6	70.4

*가구소득은 2021년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원)이 100%에 해당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5]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적용이 되지 않음.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6]에 따른 교습비등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은 개인과외 교

5)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90만명(33.6%)임.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습비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보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규모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최소 1조 1,480억원에서 최대 5조 74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6년~2030년)]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누적	연평균
서영교 의원안	-2,644	-2,486	-2,297	-2,106	-1,947	-11,480	-2,296
박성준 의원안	-10,870	-10,464	-10,127	-9,817	-9,464	-50,742	-10,148
정일영 의원안	-2,644	-2,486	-2,297	-2,106	-1,947	-11,480	-2,296
안도걸 의원안	-3,309	-3,121	-2,902	-2,680	-2,493	-14,505	-2,901
박정 의원안	-4,840	-4,560	-4,232	-3,900	-3,621	-21,152	-4,230
박수민 의원안	-3,681	-3,461	-3,198	-2,931	-2,710	-15,981	-3,196
조정훈 의원안	-4,571	-4,312	-4,010	-3,705	-3,447	-20,044	-4,009
임광현 의원안	-3,472	-3,300	-3,118	-2,930	-2,755	-15,575	-3,115
윤호중 의원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61